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김재원 · 박수현
허성무 · 맹성규 · 조계원
민형배 · 황명선 · 안호영
박 정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가 신설되어,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

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, 계획의 수립 · 교육 · 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,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,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, 지역축제 · 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,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

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통보·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,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,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, 점검,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함으로써,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·제13조의5 신설 등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중 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”을 “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, 안전교육·점검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”을 “안전관리계획”으로, “관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,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

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법률 제2108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4(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)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(이하 “안전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1.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, 홍보, 정보 수집 및 연구
2.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자문 및 지원
3.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
4.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
5.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 구제 및 구호 사업 등의 운영 · 지원
6.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지원
7.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안전재단의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,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

하지 못한다.

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.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안전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의5(체육 행사 안전정보시스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(이하 “안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수집·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, 안전점검 기관, 안전재단, 관계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) 등 관계기관에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그 밖에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체육 행사 안전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0호 중 “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”를 “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, 안전재단의”로 한다.

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스포츠안전재단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이 법 시행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안전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이 법에 의한 안전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의 모든 권리·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.

⑤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의 임·직원은 이 법에 의한 안전재단의 임·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<u>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후단 신설>	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, 안전교육·점검을-----</u> ----- -----, <u>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<u>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③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
<신 설>	
<신 설>	

현행	개정안
② 제1항에 따른 <u>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</u>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u><신 설></u>	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,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④ -----<u>안전관리계획</u>----- ----- -----<u>필요한</u>----- -----. <u>제13조의4(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)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(이하 “안전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<u>1.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, 홍보, 정보 수집 및 연구</u> <u>2.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의 자문 및 지원</u>

현행	개정안
	3. <u>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</u> 4. <u>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</u> 5. <u>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 구제 및 구호 사업 등의 운영·지원</u> 6. <u>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지원</u> 7. <u>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</u> ② <u>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</u> ③ <u>안전재단의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,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u> ④ <u>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u> ⑤ <u>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.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설립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⑥ 안전재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</u> <u>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 <u>제13조의5(체육 행사 안전정보 시스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체육 행사안전 정보시스템(이하 “안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수집·관리하여야 하는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, 안전점검기관, 안전재단, 관계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) 등 관계기관에 제출 또는</u>

현행	개정안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	<u>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1. ~ 9. (생략)	③ <u>그 밖에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체육 행사 안전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</u>
10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, 스포츠윤리센터 및 <u>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·지원</u>	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1. ~ 12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, 안전재단의</u> ----- 11. ~ 1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~ ④ (생략) 제5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u><신 설></u> 1.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5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. 1.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<u>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</u> 2.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